1. 학생 선도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염창중학교 학칙 제33조에 의거 학생 징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도 원칙)

- ①학생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②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제 2 장 학생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제3조(구성 및 의결)

- ①학생들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이 위원회는 교감, 각 학년 생활지도부장, 생활상담부장, 전문상담교사, 생활지도사안담당교사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생활상담부장, 학년생활지도부장, 사안담당교사들로 소선도위원회(생활교육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교감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사안담당 주관부장은 이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 ④이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단, 재심의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 ⑤소선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경우도 전항에 따른다.

제4조(기능)

- ①학생 징계 사안 발생 시 각 학년사안담당부의 부장은 (소)선도위원회를 소집하고, (소)선도위원회는 이를 1차 심의한다.
- ②소선도위원회에서 학생 징계사안이'사회봉사'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거나,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5조(사안 설명)

이 위원회 또는 소선도위원회는 사안 심의 전에 사안 담당교사의 사안설명과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담임교사의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학교장 재심 부의)

학교장은 위원회 또는 소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학생 또는 학부모의 재심청구)

①위원회 또는 소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재심의 의결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 및 사무처리)

선도위원회 또는 소선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선도위원회 담당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보관한다.

제 3 장 징 계

제9조(종류)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학교 내의 봉사」는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사회봉사」는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사회봉사 기관에 의뢰하였을 경우 사회봉사기관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결석 처리한다.
- ③「특별교육이수」는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특별교육이수 봉사기관에 의뢰하였을 경우 특별교육이수 봉사기관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본교 학생 선도 규정에 의해 시행하고, '무단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10조(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년생활지도부와 사안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 ②「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한다(사회봉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봉사로 대체하며, 이 때는 수업을 받지 않는다).
- ③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3항 규정의「특별교육이수」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특별교육기관의 교육이나 상담치료 개별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 ④「출석정지」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 담, 치료 등 특별 교육을 제공하고,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제10조에 해당한 징계처분 사실은 학생선도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추수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 ⑥제①항과 제②항의「학교 내의 봉사」와「사회봉사」는 징계이므로 일반 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 ⑦징계는 학교장의 결재 익일로부터 징계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단, 사회봉사 이상은 봉사활동 장소가 결정되는 시기에 실시한다.
- 제11조(기준) 징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징계 기준표는 징계 조치를 결정 할 때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

제12조(심의 확정)

- ①「학교 내의 봉사」이상의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교사의 진상 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참고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 ②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14조(징계 학생 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단, 고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경감)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해제)

징계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해당 담당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 지도)

담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제1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회 대표, 학부모 대표, 교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하며, 심의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 본교 선도규정은 1984년 2월 20일 제정하여 198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교 선도규정은 1997년 8월 30일 개정하여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본교 선도규정은 1999년 4월 30일 개정하여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본교 선도규정은 2001년 3월 10일 개정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본교 선도규정은 2002년 4월 3일 개정하여 2002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 본교 선도규정은 2008년 2월 12일 개정하여 200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8조 본교 선도규정은 2011년 6월 23일 개정하여 201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9조 본교 선도규정은 2011년 11월 17일 개정하여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10조 본교 선도규정은 2011년 12월 9일 개정하여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제11조 본교 선도규정은 2013년 4월 15일 개정하여 2013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제12조 본교 선도규정은 2019년 4월 04일 개정하여 2019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u>징 계 기 준</u>

				징 계		
구 분	항	행 위 내 용	교내	사회	특별	출석
프			봉사	봉사	교육	정지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2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예절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			
	4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	*		
	5	언행이 불량하여 주변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6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7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8	공공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	*
	9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10	금지된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	*	*	*	*
	11	인원 점검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			
	12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			
준법	13	학교 출입시 월장한 학생	*			
	14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1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16	사법 기관에 구속 석방된 학생	*	*	*	*
	17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18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 생			*	*
	19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20	공공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	*	*

				 징	ı	
구분	항	행 위 내 용	교내	사회	특별	출석
			봉사	봉사	교육	정지
	21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22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23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수업	24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25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26	백지 동맹을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27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28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를 한 학생	*			
	29	무단결석,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30	무단가출 하여 사회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31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 1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	*	*	*
근태	32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 15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	*	*
	33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 2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	*
	34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학생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 이상인 자)	*	*	*	*
	35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약품	36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	*	*	*
	37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 복용한 학생			*	*
	38	도박을 한 학생	*			
	39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
퇴폐	40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행위	41	불량 서적(음란 서적)을 소지하거나 탐독한 학생	*	*		
	42	불량비디오, CD, 테이프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	*	*	*
	43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 생	*	*	*	*

				징	계	
구분	항	행 위 내 용	교내	사회	특별	출석
			봉사	봉사	교육	정지
	44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집단	45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182	46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47	정치 관여 행위 등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48	타인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한 학생	*	*		
	49	불건전한 대화(채팅)나 모임에 참가한 학생	*	*		
정보	50	불건전한 대화(채팅)나 모임을 주선한 학생	*	*	*	*
통신	51	인터넷에 학교의 명예나 품위를 실추시킨 학생	*	*	*	*
	52	정당하지 않게 정보에 접근한 학생	*	*	*	*
	53	정당하지 않게 정보를 바꾼 학생	*	*	*	*
금품	54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חובי	55	동일 학년에 3회 이상 동일 징계를 받을 때는 가 중 처벌한다.	*	*	*	*
기타	56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선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실시한다.	*	*	*	*

2.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기본생활지도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생활지도를 통하여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정착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금지 유형) 금지되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 지속적으로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 2 장 교사·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3조(교사의 권리와 책임)

- 1. 교사의 교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교사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 야 하는 권리이다.
- 2. 교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3.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 4.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 (학생의 권리와 책임)

- 1.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하는 권리이다.
- 2. 학생은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3. 학생은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고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 4. 학생은 임신·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전학, 등교 정지 등 학습권 침해를 받지 않는다.

제 3 장 문제행동 학생 지도 방법

제5조 (방침)

- 1.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생활 평점제를 운영한다.
- 2. 생활 평점제 운영은 '생활 평점제 시행 안'에 따른다.

제 4 장 성찰교실 운영

제6조(목적)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격리하여 지도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육공간인 성찰교실을 운영한다.

제7조(담당자)

- 1. 성찰교실 운영의 담당자는 교감으로 하며, 전문상담자의 도움을 받는다.
- 2. 교실에서 성찰교실로의 학생 이동은 학교관리자, 배움터지킴이, 전문상담자 등이 담당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교 내 연락 체계를 만든다.

제8조(장소) 성찰교실은 2층 소회의실에 설치, 운영한다.

제9조(교육활동 내용) 성찰교실의 교육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상황 파악 활동 : 학생이 교실이나 교내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기술한다.
- 2. 기본 상담 및 훈육
- 3. 해당 교과에 대한 자기주도학습 실시
- 4. 다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5. 자기행동이행계획서 작성
- 6. 전문상담자와 연계 활동

제10조(사후 처리) 성찰교실 활동 사후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상황 파악 활동 시 학생은 자신이 겪은 상황과 관련하여 자기의 생각을 교사에게 전달하는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칸을 작성하게 한다.
- 2. 성찰교실 관리자는 학생이 작성한 것을 해당 교사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교사의 답 글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다.
- 3. 성찰교실 담당자 혹은 학교 관리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교육적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5 장 체벌 발생 시 조치

제11조 (학생고충처리센터)

- 1. 학교관리자는 학생들이 체벌 발생을 알릴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고충처리센터 게시판을 운영한다.
 - 2. 학생고충처리센터에 신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한다.

제12조(단계별 조치) 체벌 발생 시 단계별 조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고 : 체벌 발생 시 학생은 학생고충처리센터 또는 교감에게 직접 체벌 상황에 대해 알리다.
- 2. 조사 : 교감은 교사와 학생에게서 체벌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교사와 학생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준다.

- 3. 중재 : 교감은 교사 학생 간 중재 및 화해를 유도하며, 학생과 교사 사이에 상호 수용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 4. 연수명령 조치 : 학교장은 반복적으로 체벌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방학을 이용해 자비 연수를 이수하도록 명령하며, 연수는 분노 관리 및 대화 방법, 분쟁 해결 및 평화교육 등학생 지도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한다.

제 6 장 규정의 개정

제1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부 칙

- 제1조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처리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3조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9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이 규정은 2013년 4월 26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1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 학생 용의복장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염창중학교 학생으로 하여금 생활 태도와 용의 및 복장을 단정하게 함으로써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건전한 기풍을 진작시키는 데 있다.

제2조 (두발)

1. 학생다운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용모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3조 (기타용의)

- 1. 속눈썹의 부착이나 심한 색조 화장을 금한다.
- 2. 코, 입 주위, 혀 등을 뚫는 것을 금한다.
- 3. 위 사항 이외에 학교장은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 저해되는 용의에 관한 사항을 규제할 수 있다.

제4조 (교복)

- 1. 교복은 날씨의 변화에 따라 춘,하,추,동복을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다.
- 2. 계절에 따른 교복의 형태, 색상 및 디자인은 뒷면 [별표 1,2]와 같다.
- 3. 교복 형태의 변형을 금지한다.

제5조 (명찰)

- 1. 명찰은 학년에 따라 흰색, 노란색, 진남색으로 한다.
- 2. 명찰은 교복 상의 윗주머니 상단 위에 부분 부착한다.

제6조 (신발)

- 1. 학생신발은 실용적인 학생용 운동화뿐만 아니라 여학생은 학생용 단화도 허용한다.
- 2. 실내화, 실외화를 구분하여 학교내에서 슬리퍼 착용을 금한다.

제7조 (휴대전화)

- 1. 휴대전화는 일과 중에(08:50~종례) 사용할 수 없으며, 교내에 설치된 휴대전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시험 기간 중에는 소지할 수 없다.)
- 2. 디벗, 스마트워치 등 소지하고 있는 전자기기는 수업관련 혹은 적절한 용도 외에는 일과 중사용할 수 없다.
- 3.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담당교사의 허락 하에 사용할 수 있다.
- 4. 학생이 등교하여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벌점 부과하며, 2차 적발 시 학부모를 동반하여 소선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벌점은 누가하여 기록함.)

부 칙

- 제1조 본 규정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규정은 2008년 8월 26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3조 본 규정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4조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5조 본 규정은 2013년 4월 26일 개정하여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 본 규정은 2013년 11월 25일 개정하여 2013년 11월29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 본 규정은 2019년 8월 27일 개정하여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8조 본 규정은 2022년 12월 24일 개정하여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계절에 따른 교복의 형태, 색상 및 디자인

구-	ш		형태 및	복장	
	_		남녀 등	공용	
		겉옷(후드집업)	색상	티셔츠	색상
동	상 의	 색 상 : 네이비(감색) 디자인 : 후드 집업 혼용률 면 50%, 폴리에스테르 45%, 폴리우레탄 5% 안감: 얇은 기모처리 (물세탁 가능, 세탁 시 변형 없는 재질) 주머니 부분 동일 색상 지퍼처리 소매, 허리 립 좌측 어깨라인에서 7cm아래 지정된 부위에 교표 부착 	감색	 ▶ 색상 : 밝은(옅은) 회색 ▶ 디자인 : 라운드형 ▶ 목, 소매, 허리 립 -목 부분 립 늘어나지 않게 처리 -목립에서 아래쪽으로 V자 재봉선 2개 넣기 ▶ 혼용률 : 면 40%, 폴리에스테르60% ▶ 좌측 가슴부위 이름표 주머니위 2cm 지정된 부위에 외펜(교표) 부착 ▶ 허리 립은 약하게 처리 	밝은 (옅은) 회색
		바지(하의)	색상	치마(하의)	색상
	하의	2개국 시나된 66비시	짙은 회색	 ▶ 허리 양옆에 외주름 2개의 세미 A라인 ▶ 지퍼는 왼쪽, 양옆에 각각 주머 니1개씩 (총2개) ▶ 허리조절기 및 고무밴드 부착 	남색 비탕에 자주, 회색체크
하	상 의	▶ 색상: 회색계열연하늘무지(교복첨부사진점 ▶ 혼용률:폴리=100 * 원단안쪽: COOLON/원단겉면:DTY(일반 * 통기성, 속건성, 흡수성이 우수할 것 뜯김 현상 * 등판메쉬 및 땀받이로 산뜻함 유지 * 3~4버튼생활티/*아우트중앙에 와펜(교문 * 아시안쪽,우아단작안쪽,시다단작양면배	폴리), CO(상, 보푸라기 표)부착	현상이 적은 소재 사용 *주머니, 소매0.3cm파이핑배색	연회색 깃과 주머니 상단에 2.5cm 너비의 연회색선
복	하의	▶색상: 진곤색무지 ▶소재: 하.사방스 폴리:폴리우레탄=93:7 *국내산원단(부드러운촉감), 원단4방향 스 *허리조절기 부착으로 허리사이즈 조정기 *엉덩이부분 메쉬안감으로 쾌적함유지 *일자형반바지(카브라없음) *NO-TU *착장시 왼쪽밑단에서 위로 약3~5cm위치	트레치(P+ -트레치로 +능, 고무변 CK	PU) ▶혼용률: 편안한 착용감 우수 <mark>샌드 부착</mark>	밑단 (카브라없음)
- 춘 [:]	-	▶ 남녀 공히 동복에서 상의 겉옷만을 병	번는다.		

동복(춘추복)

학생 생활규정





생활복(하복)



4. 생활평점제 규정

제1조(목적) 학생들의 인성지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선도 위주의 학생 생활 지도를 목표로 기본 생활 습관, 예절, 교칙 등의 규칙과 약속을 준수하는 태도를 함양하고 질서를 지키는 학생으로 지도하여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침)

- ① 모든 학생들이 바르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벌점 부과 항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벌점 부과 시 객관성, 형평성, 타당성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③ 학생 . 학부모 . 교사들이 생활 평점제의 기본 취지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인식하도록 연수 및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
- ④ 전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실시되도록 한다.
- ⑤ 생활평점제는 1년 단위로 시행한다.
- ⑥ 상, 벌점 기준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생활교육위원회」
- 의 심의를 거치고,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한다.

제3조(운영방법 및 운영절차)

- ① 사전에 교사 연수와 학생.학부모 홍보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평점제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 ② 전 교사가 생활 평점제 기준표[별첨 1]에 의거하여 생활 평점제 시스템에 입력한다.
- ③ 평점제 시스템에 입력하기 전에 해당 학생에게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 ④ 상, 벌점 부과는 각 항목당 1학생 1교사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항목이 다를 경우는 복수부과가 가능하다.
- ⑤ 교사의 현장 벌점 부여를 거부하여 생활상담부로 인계되면 벌점을 가중(2배) 부과한다.
- ⑥ 벌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별첨 2]의 서식에 의하여 3일이내에 생활상담부로 신청하고, 접수된 이의 신청은 생활상담부장, 학년별 사안담당 교사가 이의 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학생에게 통보한다.
- ① 벌점을 받고도 태도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학생은, '상담 및 경고 ⇒ 교실 내 지도 ⇒ 교실 밖 지도 ⇒ 성찰 교실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성찰 교실에 인계된 학생은 성찰 교실의 지도 프로그램을 따른다. 성찰 교실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성찰 교실 담당자의 요청이 있으면, '학교관리자 특별상담 ⇒ 지역교육지원청 연계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⑧ 학년부 평점제 담당 교사는 정기적으로 평점제 누가기록을 확인하여 30점 이상인 학생을 생활상담부에 전달하며 생활평점제를 관리한다.
- ⑨ 담임 및 부담임도 생활 평점제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벌점을 받은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벌점이 30점 이상인 학생은 학년부 평점제 담당교사에게 통보한다.
- ⑩ 벌점 30점 이상으로 생활상담부에서 지도 받고 있을 때 다른 항목의 벌점을 받게 되면 가중하여 지도한다.
- ⑪ 앞으로 상점은 그린 포인트, 벌점은 레드 포인트라고 한다.

제4조(결과 처리)

- ① 벌점이 20점 이상이 된 학생은 생활 평점제 지도 기준에 의거하여 지도한다.
- ② 벌점이 30점 이상이 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벌점	20점 이상~30점 미만	30점 이상		
지도	담임, 부담임 지도	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의거 (교내봉사 이상 등교 정지까지)		

- ③ 벌점 30점 이상을 받아 해당하는 지도를 받은 학생은 벌점을 삭제하도록 한다. 단 불성실하게 지도에 응하면 연장하여 지도한다.
- ④ 벌점으로 지도하기에 그 정도가 극히 심하면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도한다.
- ⑤ 지도 교사는 교육상 필요할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하거나 내교토록 하여 상담과 지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벌점 항목에 예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생 기본 생활 습관에 위반되는 행동은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⑦ 담임 및 부담임의 지도 방법 예시
 - 학습 활동 : 양서 필사, 영어, 명시 암기, 교과 내용 자습 등
 - 봉사 활동 : 교내 청소, 주번 활동, 수업 활동 도우미 등(봉사 시간 불인정)
 - 정서안정 활동 : 음악듣기, 독서, 앞으로의 각오 기록, 명상을 통한 심성 수련, 부모님께 편지쓰기 등
 - 성찰 교실 지도 : 성찰 교실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지도
 - 기타 교육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지도 방법
- ⑧ 벌점 30점 이상을 받아 지도를 받은 학생은 당해년도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며 현임원인 경우 남은 기간의 자격을 정지한다.
- ⑨ 벌점 30점 이상을 받아 징계를 받은 학생은 각종 수상, 표창, 추천 등에서 제외한다.

제5조(상.벌점 부과 및 지도 시 유의 사항)

- ① 지도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② 벌점 항목에 해당하는 행동 적발 시 불가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에서 벌점을 부과하며, 사후에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③ 수업 태도와 관련한 벌점과 수행 평가 상의 불이익을 이중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④ 기준 이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벌점을 부과하지 않으며, 특정 학생에게 집중되거나 벌점을 남용하지 않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3년 11월 25일 개정하여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22년 12월 24일 개정하여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생활 평점제 기준표

영역	평 가 항 목	점수	비고
	1 교내 폭력, 절도, 음주, 흡연 등을 신고	1	
	2 솔선하여 교내외 청소, 휴지 줍기, 껌떼기 등	1	
	3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한 학생	1	
	4 급우 간의 싸움을 말린 학생	2	
	5 신체가 불편한 학생을 도운 학생	2	
그린	6 분실물을 습득하여 신고한 학생	1	
포인트	7 위기에 처한 학생을 도운 경우	2	
	8 외부인의 학교, 교실 무단출입 신고	1	
	9 발표시 자발적으로 솔선하는 학생	1	
	10 친구의 공부를 도와주는 학생	2	
	11 학교 행사시 봉사활동 참가(봉사시간인정 제외)	1	
	12 안전사고 신고	1	

영	쟹	평 가 항 목	점수	비고
		1 수업 시간에 면학 분위기 저해 행위	1~5	
	수	2 수업 활동 준비 부족	1	
레	업 태	3 수업시간에 전자기기 작동 (휴대폰은 선도규정에 따름)	1	
=	도	4 수업 시간에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1~5	
_		5 기타 수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1	
모	용	6 교복 착용 규정 위반, 불량	1	
인 트	의	7 실내화, 실외화 구분 위반	1	
	복	8 교칙에 위반되는 장신구 착용	1	
	장	9 기타 용의 복장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1	

영	역		평 가 항 목	점수	비고
80	ठा	전 법	10 무단 투기(쓰레기, 껌, 음식물 등) 11 무단 투기(침, 가래 등) 12 낙서 13 기물 파손 14 타인 물품(교과서, 교복, 체육복, 학용품 등) 미반환 15 공공 문서 위조(외출증, 조퇴증, 보건입실증 등) * 공공 문서 위조 및 훼손(출석부 등) 16 실내에서 소란 행위(사소한 폭력 포함) * 학교폭력(집단따돌림, 성폭력 등) 17 교내외에서 안전 규칙 위반 행동	점수 1 2 1 1 1~3 1 1	비고 선도위원회 폭력대책위
			18 급식 관련 위반 행위 19 지시 없이 타 학급 및 교무실, 특별실 출입 20 교내외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21 허위로 그린 포인트를 받으려는 행위	1 1 1 1~3	H_C 0 0 =
레 드 포	생 활 태	근 태	* 고사 중 부정행위 관련자 22 무단 지각, 결과, 조퇴, 외출(조회, 종례 포함) 23 무단 결석 24 고의로 지도를 빌미로 수업에 빠지는 경우 25 고의로 보건실에 출입하는 경우	1 2 1	선도위원회
인 트	ᅜ	태도	26 청소나 주번 활동에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경우 27 금전이 교환되지 않은 유사 도박 행위 28 월담 및 담장 틈을 이용한 출입하는 행위 29 책상, 사물함 위에 올라가는 행위 30 언행이 불량한 경우(욕설, 불온한 행위 등) 31 위반 적발 시 도주하거나 타인 명의 도용 32 교사의 정당한 지시 불응 33 학교 적응 교육에 무단 불참 34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및 폭행 35 흡연, 음주, 환각제 복용 등 36 금품 갈취, 절도 37 물품 소지(카드, 화투, 외설물, 흡연 도구, 주류, 환각제 등) 38 학생간 불법적인 상거래 행위 39 이성간 풍기문란 행위 40 정당한 사유 없이 벌점카드 발급 거부 및 훼손	1 1 1 1~3 3 3 3 3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점 부과 및 선도규정에 의거 징계
			41 기타 경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1~3	

[별첨 2]

이의 신청서

		0	의	신	청 서		
인적사항		학년	반	번	이름 :		
발급일자	202	년	월	일	(교)시	분	
벌점 내용							
이유 제기 사유							
벌점 부과 교사 확인						0	

- * 이의 신청은 벌점 부과 3일 이내에 해야 함.
- * 정당하지 않은 이의 제기 시에는 벌점이 가중 부과될 수 있음.
- *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벌점 부과 교사에게 확인을 받아 생활상담부에 제출.